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77
------------	------

제출연월일 : 2021. 7.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상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 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특정건설기계를 포함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비
 - 상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용어와 동일하게 변경
- 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확대
 - (기존) 특정경유자동차
 - (변경)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시행 중)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재원(국비 60%, 도비 5%, 시비 35% 구성)은 2021년 본예산에 포함됨
 - 사업대상인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가 진행되어 사업규모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대 수	2,050대	570대	200대
사업비(시비)	1,939백만원	539백만원	189백만원

7. 입법예고 결과

-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5. 28. ~ 2021. 6. 16. [20일간]
-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경기도 관련부서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특정건설기계”란 대기관리권역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3.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결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해서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조치명령 등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서명		환경정책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 · 성명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팀장 직위 · 성명	교통환경팀장 장동수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장동수 (790-5032)



관계법령 발췌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4. 8] [법률 제17983호, 2021.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 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로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 ~ 4. 생략
5.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6. “특정건설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3조(「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이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 ② 생략

-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면제한다.

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2.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⑥ ~ ⑧ 생략

제27조(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특정건설기계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특정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
3. 특정경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4.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

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6.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
 7.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8. ~ 13. 생략
- ② 생략